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 內 事 件

實用新案登錄無效

〈大法院 第3部 判決〉(1981. 4. 14)

裁判長：大法院判事 김 중 서

關與法官： " 안 병 수 · 유 태 흥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：최승진(서울 성동구 마장동 766—19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(부산 서구 신평동 370—19)
3. 原 審 決：特許廳 1979. 10. 31字, 1978年 抗告審判(當) 第11號審決.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
5. 理 由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舊實用新案法第24條2項(現行法第25條第2項)이 規定한 實用新案登錄의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當該登錄實用新案과 同種의 物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業者로서 當該登錄實用新案의 權利存續으로 인하여 그 權利者로부터 權利의 對抗을 받거나 받을 虞려가 있어 그 被害를 받는 直接的이고도 現實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고 할 것인 바 原審이 確定한 事實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은 이 事件 審判請求當時 鋼管都賣業을 經營하다가 그 營業을 事實上 廢業한 후 原審의 審決終結前까지 다른 營業을 한 事實도 있다는 것이니 審判請求人은 本件 登錄實用新案의 權利存續으로 인하여 權利者인 被審判請求人으로부터 權利의 對抗을 받을 虞려가 없으므로(鋼管과

本件 登錄實用新案인 鑄鐵管은 各製造方法이 判異한 別個 物品이다. 을제1, 2호증 참조) 위 實施의 直接的이고도 現實的인 利害關係가 있는가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.

따라서 같은 趣旨로 한 原審의 判斷措置는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法理誤解의 違法이 없으니 論旨는 그 理由가 없어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一 參 考 一

抗告審判

1978年 抗告審判(當) 第11號
 抗告審判請求人：최승진
 被抗告審判請求人：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

위 當事者間의 1976年 審判第256號(登錄第7, 546號 實用新案의 登錄無效審判) 審決不服 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：本件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抗告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
1976年 審判第256號

審判請求人：최승진

被審判請求人：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

參加申請人：영진주철공업주식회사

主文：本件參加申請人의 參加는 이를 許可한다.

審 決

1976年 審判第256號

審判請求人：최승진

被審判請求人：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

參加申請人：영진주철공업주식회사

위 當事者間의 登錄第7546號 實用新案의 登錄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：本件審判請求는 이를 却下한다.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